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73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등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73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116조의7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등

현행	개정안
☐ 체납자료의 제공(제44조제1항) ○ 제공대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 <u><신설></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u><신설></u>	☐ 체납자료의 제공대상 확대 ○ 제공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 (현행과 같음) ☐ <u>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혜택 배제 등 제재 강화(제116조의7)</u> ○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제116조의2 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법인은 제외) ○ (소액면세 배제)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미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말소) 발급 제한 및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 ○ (보세판매장 이용 제한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통보 및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 요청 ○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탁송품 수입신고 생략 미적용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241조제1항) ○ 물품의 수출·수입·반송 경우 세관장 신고 사항: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고 사항 추가 ○ 신고 사항 추가: <u>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u>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제5호의 신고사항을 법률로 상향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제116조의7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품 또는 탁송품 반입,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신청 또는 사용,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경우부터 적용
--	---

* 박성훈의원안 2026. 2. 24. 발의(의안번호 16973)

가. 개요

- ☐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각종 혜택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세, 지방세, 관세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관세법」상 특례 적용을 제한하도록 함.
-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압류 및 매각 등 강제징수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규정으로써 현행 「관세법」에 규정된 제재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규정(「관세법」)]

구 분	조 문	내 용
현행법		
체납자료 제공	제44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에 따라 체납액 500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
명단 공개	제116조의2	체납액 2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명단 등 관보 게재, 정보통신망 게시
감치	제116조의4	체납액 2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30일 이내 범위 감치
출국금지	제116조의5	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출국금지·출국정지
개정안		
체납자료 제공	안 제44조	체납자료 제공 요구자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추가
소액면세 배제	안 제116조의7 제1항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인 소액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제외
개인통관부호 발급 제한·말소	안 제116조의7 제2항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또는 발급된 개인 통관고유부호 말소
보세판매장 이용 제한 등	안 제116조의7 제3항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체납자 명단 통보,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안 제116조의7 제4항	체납자에 대한 탁송품의 수입신고 생략 미적용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체납자료 제공, 명단 공개, 감치 등 「관세법」과 유사한 제재수단과 함께 관허사업에 관한 허가 제한 등의 추가 제재수단을 규정함.

□ 5년간(2021-2025) 체납액 통계를 보면 국세와 관세 모두 체납발생 총액 금액 및 세수총계 대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5년 기준 세수총계 대비 체납발생 총액 비율이 국세와 관세 각각 11%, 3%를 나타냄.

[연도별 체납 관련 통계(국세, 관세)]

(단위: 억원,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세					
세수총계	3,344,714	3,842,495	3,356,723	3,283,896	3,650,519
체납발생 총액 ¹⁾	291,995	344,471	398,762	419,603	431,993
체납액 정리 실적	164,592	174,175	205,233	209,400	197,016
고액체납자 신규공개자	7,016	6,940	7,966	9,666	11,009
고액체납자 신규체납세액	53,612	44,196	51,313	61,896	71,815
관세					
세수총계	622,245	816,386	680,118	669,509	688,705
체납발생 총액 ¹⁾	16,862	20,953	21,337	22,058	22,814
체납액 정리 실적	1,082	1,950	1,437	1,272	1,434
고액체납자 신규공개자	21	16	16	12	33
고액체납자 신규체납세액	836	345	3,604	68	682

주: 1) 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발생액

자료: (국세) 국세통계포털(TASIS), (관세) 관세청 제출자료

-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총액과 신규 고액체납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됨.
- 재정경제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에 더하여 면세 배제 등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는 신중 입장임.

또한 일반적으로 체납은 징수의 대상이므로 새로운 과세연도나 과세물품에 대해 공제·감면을 원천 배제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세청에서는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 자료를 공개함.¹⁾

- 고액·상습채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집행을 위한 간접 강제수단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고액의 세금이 채납되어 있는 자가 소액면세 등 적용으로 세금 면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존재함.

- 다만, 신설하는 행정제재가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개별 행정제재에 대한 검토사항은 이어지는 내용에 서술함.

나. 행정제재별 검토

(1) 채납자료의 제공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채납자료의 제공(제44조제1항) ○ 제공대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 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채납자료의 제공대상 확대 ○ 제공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채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 (현행과 같음)

1)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세외수입 채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2026.2.23.

- 체납자료의 제공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²⁾인 경우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관한 체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체납자료의 제공 대상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³⁾⁴⁾ 이는 조세채권이 우선되므로 여신기관 등에 적절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⁵⁾ 관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 그러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해당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2) 500만원 이상 (「관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3) 「관세법」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세법」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5)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한 것은 체납자의 사업장 등에서 체납자의 명예나 신용에 영향을 끼쳐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되지만, 체납자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는 달리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 등의 체납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인사·승진·계약 갱신 등 근로관계에서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소액면세 배제,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혜택 배제 등 제재 강화(제116조의7)</u> ○ (소액면세 배제)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미적용 ○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탁송품 수입신고 생략 미적용

□ 개정안의 소액면세 배제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⁶⁾ 또는 여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6조의7(고액·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라 한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세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

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등으로서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 달러 이하의 것⁷⁾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 면제를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의 탁송품 특별통관⁸⁾의 절차에 대한 적용 배제는 미화

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작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7) 「관세법」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8) 「관세법」 제2조(정의)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등으로서의 탁송품 수입 시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소액면세 규정이나 탁송품 특별통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활성화된 온라인 해외직구 상품 구매에 대한 면세 등 편의사항을 배제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이행강제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같은 편의사항 배제로 고액·상습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한편,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 명단공개자 대상의 소액 휴대품 등에 대한 별도의 관세 부과 및 징수는 행정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행정비용을 높이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3) 개인통관부호 발급제한·말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혜택 배제 등 제재 강화(제116조의7)</u>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말소) 발급 제한 및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발급 제한 또는 말소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의 경우, 물품의 수출입 등의 경우에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사항⁹⁾에 대한 전면적인 말소라는 점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해당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

□ 종합적으로 볼 때,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각종 혜택 배제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효과는 일정 정도 기대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실익과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9)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